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7

2011년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

가. 제출이유

○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화재사망자의 54%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택화재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책추진 시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과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

○ 주택의 신축·개축 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도·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 용 훈)

가.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구[1] 및 단독경보형감지기[2]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제8조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효율적 시행 및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1) 소화기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화기, 자동식소화기 등이 있으며,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됨.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장비로 건전지를 사용하여 수명과 방전 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요망됨.

3) 아파트와 기숙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경보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을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
- 2011. 2. 10 김태원 의원 발의
- 2011. 8. 4 공 포
- 2012. 2. 5 시 행

○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화재로 인한 사망자 108명 중 58명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택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를 하더라도 소화기구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초기진압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주택의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화재로 인한 사상자 현황(서울시)〉

구분	화재발생				사망자				부상자			
	전체	주택			전체	주택			전체	주택		
		계	**일반주택**	아파트		계	**일반주택**	아파트		계	**일반주택**	아파트
평균	5,722	1,859	893	966	36	26.3	19.3	7	192	93.7	69.3	24.3
2011	5,526	1,768	842	926	29	25	19	6	168	85	63	22
2010	5,321	1,704	805	899	42	32	21	11	188	92	63	29
2009	6,318	2,104	1,031	1,073	37	22	18	4	220	104	82	22

- 연평균 화재발생 : 1,859건(전체 화재 5,722건의 **32.5%**)
- 일반주택 **893건**(전체 화재의 15.6%) / 아파트 966건(16.9%)

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아파트(5층 이상), **② 연립주택(4개층 이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③ 다세대 주택(4개층 이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④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음.

○ 화재발생시 조기에 이를 인지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과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

※「법」이 지난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시급성도 인정됨.

○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안이 입안되었다는 점을 들어 규제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본 조례안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택 허가·신고시 설치여부를 확인(지도·안내) 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 소화기구 설치 비용 부담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주요사항들은 규제대상으로 입법절차 추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등 면밀한 사전 입법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추진경위

2011. 12. 29 소방방재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 시달(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5831호)
2012. 3. 6 조례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61호)
2012. 3. 15~ 4. 4 입법예고
2012. 4. 24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실 행정규제 대상 심사 결과(법무담당관-5703, 2012. 3. 22)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정(안)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 소방시설 우선 설치 주택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주택 신·개축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지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조례 준칙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

○ 「법」 제8조제3항은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 제2조 및 제3조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2항 관련)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조문에 법제8조제2항 관련사항도 함께 명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법」 제8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명 또한 「법」 제8조제3항 관련한 사항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설치"라는 용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좀 더 간명하고 조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인 제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2)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장과 구청장이 주택화재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안 제1항),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항) 있음.

○ 주택화재 피해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을 위한 화재예방 시책 마련 및 예산확보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사무는 광역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자치구 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 시 조례로서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강행 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집행부는 「법」 제8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생활이 곤궁한 자,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보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에 시책추진 책무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3)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및 예산의 지원 근거 명시(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1항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관련 시책 추진 시 우선 설치대상 주택을 명시하고, 제2항에 설치사업 소요경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5. 시장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집행부는 2007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 추진(부시장방침 제157호, 2007. 7. 25)하여 왔으며, 그동안 방침에 의한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2012년도는 시정운영계획(2012. 1. 9 "4-2. 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에 따라 추진

※ 우선설치대상 : 홀몸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8,126세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대상 설치)

※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2010~2014년)

구분	계	설치완료		**추진중**	추진계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급세대	**108,126**	9,174	22,190	11,300	32,731	32,731
- 홀몸노인	**51,583**	5,296	12,239	5,148	14,450	14,450
- 소년소녀가장	**203**	9	122	10	31	31
- 장애인 등	**56,340**	3,869	9,829	6,142	18,250	18,250
소요예산 (백만원)	**5,961**	275	688	773	2,061	2,164

※ 대상별 설치 소요 예상액 : 68,346원(2012년 세출예산편성기준)

○ 기존 주택 중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에 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세입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이 임대시 설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검토와 예산확보 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5호(시장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는 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우선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본 조례안에서 연차적 보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연차적 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시장·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 그 주택의 규모 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제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에서는 신축 또는 개축뿐만 아니라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적용대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여부 지도·안내의 대상을 「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법」에 정한 범위를 조례에서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조문내용에는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명은 “소방시설 설치·확인”으로 하고 있어, 조명과 조문의 불일치 여부와 아울러 지도·안내 및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전라남도 등의 경우에는 신고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별지 서식)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부과는 시민들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에 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한 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 하겠음.

5) 소방시설 설치 종류 및 기준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는 「법」 제8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방시설(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세대별·층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안 제1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안 제2호)″하도록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구획된 실 :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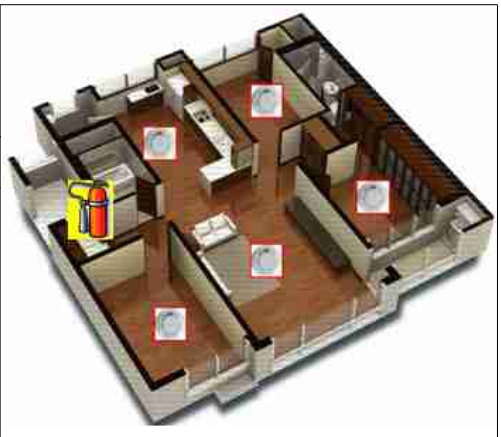 < 설치 예시>

※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약제 구분 /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그밖의 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특수가연물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	○	○	-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라는 규정이 전문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를 구매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별지 등)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1호는 개조식[4]으로, 안 제2호는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조례 체계상 형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조례안 제출 이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고시)」(2012. 6. 11) 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관련 용어(수동식 소화기 → 소화기)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4) 개조식(個條式) : 앞에 번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6)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준용(안 제6조)

○ 안 제6조는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5]에서 제외된 일반주택에 그 밖의 소방시설(예를 들면,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없어, 화재예방을 위하여 일반주택에 비용을 들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안 제6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조문상으로만 보면, 「법」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이외의 추가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화재 조기 감지 및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설치 사항(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법」에서 정하고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인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상위법에 의한 제정안인지? 설치한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화기 업체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상위법에 의한 것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주택에 설치할 경우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 할 것임.

(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임. 벌칙 규정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할 것임.

(답변) 벌칙이 없어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한 후 제도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

(질의) 소화기 내구연한이 있을 것임. 소화기의 유지관리 등 대시민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답변) 반상회 등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임.

(질의) 취약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어떠한 근거로 지원해 왔는지?

(답변) 그동안 방침에 의해 지원했으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함.

(질의)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완전 부착이 아닌 이동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선 설치 지원했던 세입자가 가져갈 경우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듦.

(답변) 유지 관리에 대해 고민해 볼 사항임.

(질의) 제명에 설치라는 말을 중복했는데 고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의 우선 설치대상에 조손가정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답변) 포함해도 상관없으나, 제5호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봄.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 시책 추진 책무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며, 소방시설 설치 확인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 시키고, 조문의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함.

○ 안 제1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로 함.

○ 안 제2조 제1항 중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중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과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함.

○ 안 제4조 조명 중 “개축 시”는 “개축 등”으로, 본문 중 “신축 또는 개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함.

○ 조문 문맥의 명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안 제5조 제1호를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설치하되”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07

제안년월일 : 2012년 7월 9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 시책 추진 책무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며, 소방시설 설치 확인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 시키고, 조문의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함(안 제명).

○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조 중 “제8조 제3항”을 “제8조”로 함(안 제1조).

○ 화재예방 시책 추진 책무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항 중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중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과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확인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4조 조명 중 “개축 시”는 “개축 등”으로, 본문 중 “신축 또는 개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함(안 제4조).

○ 조문 문맥의 명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안 제5조 제1호를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설치하되”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중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과 제2항 중 “및 구청장”은 삭제한다.

안 제4조 조명 중 “개축 시”는 “개축 등”으로, 본문 중 “신축 또는 개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한다.

안 제5조 제1호를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설치하되”를 “1개 이상 설치한다.”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

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 **및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

내하여야 한다.	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